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과 이경숙·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문 성 호
의원입니다.

□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2011년부터 지하철보안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
니다.

□ 그러나, 지하철보안관은 사법경찰권이 없어 역사 내 불법 점
거 및 지하철 운행 방해 행위에도 적극적인 제지가 불가합니
다.

□ 서울 지하철은 천만 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이지

만 지하철과 역사 내 불법 상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빈번한 무단 점거로 대중교통 운영에 크나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법경찰권한이 없는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보안관은 각종 범죄 행위를 단속하고 예방 및 대응하는 것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 반면 광역철도의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으며, 신분 또한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철도 범죄 예방과 단속 및 즉각적인 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수송 통계’에 따르면 운행거리만 4,204만 917km로 지구 1,049바퀴를 돈 것과 같으며, 수송은 하루평균 660만 5,250명, 연간 24억 명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막대한 규모의 수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 지하철은 이용객의

안전과 편안한 이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보장하기 위해 일선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마주해야 하는 서울시 지하철보안관에게 광역철도에는 있는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모순적인 행태이자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본 건의안은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및 불법적 행위를 단속하고,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하철보안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국회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